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7. 2. 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본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2. 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김 정 남 (서명)

- 목 차 -

1. 지배구조 일반 ---------- 4

2. 이사회 ---------- 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32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39

6. 감사위원회 ---------- 42

7. 위험관리위원회 ---------- 49

8. 내부거래위원회 ---------- 55

9. 경영위원회 ---------- 59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63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63

[별첨1] 2016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별첨2] 지배구조 관련 사규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별첨3]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및 경영임원의 임면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內 사외이사 구성비율 : 60%_2016년말 기준)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대표이사 등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에 대한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규정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그 임기를 당사에 6년 이상 재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계열사를 포함하여 최대 9년 이상 재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재선임 시 대상이 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6년말 현재 이사회는 보험업 등 금융경영분야 2명, 금융경제분야 1명, 행정분야 1명, 경영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업지배구조헌장, 윤리강령 등 주요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http://www.idongbu.com/,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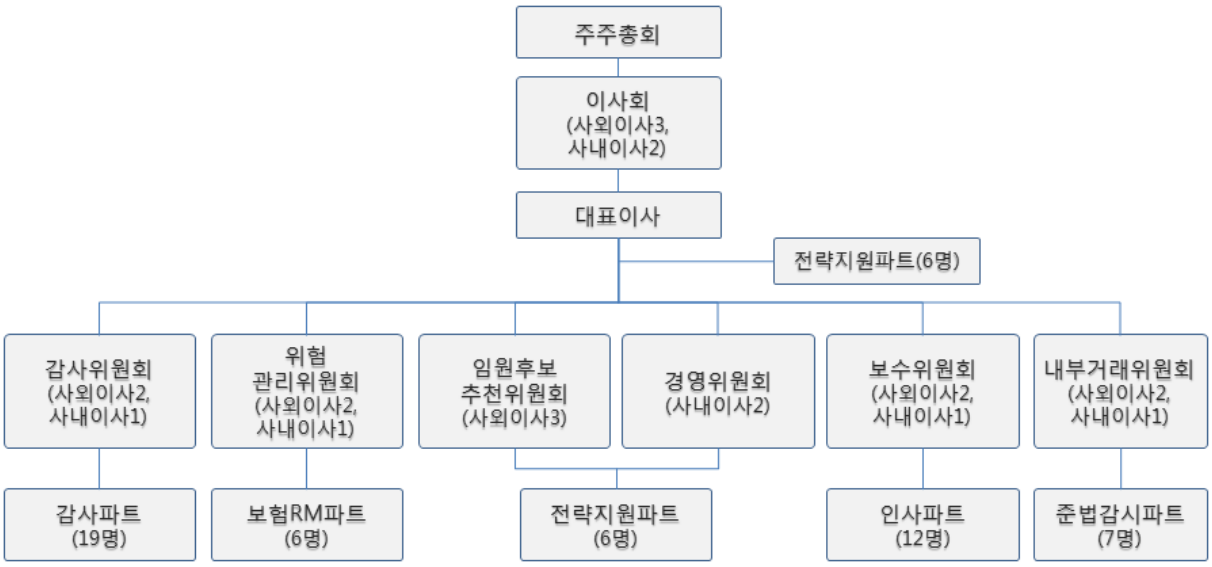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 내규의 전문 및 세부내용 등을 당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내이사가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규정 등에 의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기능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60%(3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 의사결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사외이사후보군 구성 및 연간 사외이사 평가 시행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선발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과 역할의 명확화 및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제49기 제13차 이사회), 2016년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2016.8.1일)에 따라 사내 지배구조체계를 총괄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제50기 제7차 이사회_2016.10월)

(3)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당사는 6개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회사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 3인(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등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을 통한 위험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의결 및 보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금융경제분야 1명, 행정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긴급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경영일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점의 이전/폐쇄, 지배인의 선/해임 등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 대상자 결정,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재무/리스크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임직원의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및 적정성 심의, 연차보상체계 점검, 성과보상 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를 통한 내부거래의 공정성 및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 및 경영건전성을 고려하여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부거래 관련 규정의 제개정,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부거래의 사전 심사 등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의결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3/5	김정남(상임)	정관§24~35, 지배구조내부규범§4~6,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	회계와 업무 의 감사 등	2/3	박상용(사외)	정관§36~38, 지배구조내부규범§16, 감사위원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3/3	김성국(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5,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전사 위험관리 등	2/3	김정남(상임)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7,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경영위원회	경영일반사항 의결 등	0/2	김정남(상임)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20, 경영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임직원 성과보상 등	2/3	안종태(사외)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8, 보수위원회규정
내부거래 위원회	내부거래 사전심의	2/3	안형준(상임)	정관§33, 지배구조내부규범§19 내부거래위원회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5. 최고경영자승계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고, 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I.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사업계획(경영전략, 경영목표, 예산 등)을 수립 및 평가합니다 (정관§30, 이사회규정§10).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정관§30, 이사회규정§10).

이에 따라 '17년 경영목표·전략은 '16.4분기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위원에 사전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6.12월 개최된 제50기 제8차 이사회에서 경영목표 및 전략 등을 승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경영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2017년 경영전략 : Risk 관리 기반의 업계 최고 사업역량 확보

구 분	목 표
매출액	122,900억원
영업이익	7,40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00억원
당기순이익	5,080억원

II. 정관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상법§393의2, 이사회규정§10)
2016년 8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사유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반영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근거
위원회의 명칭 변경 (제25조, 제25조의2)	▪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명칭 명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법」 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 (제30조)	▪ 지배구조법 상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의 정관 반영 ▪ 지점의 설치 등 산하 위원회로 위임 허용	「지배구조법」 제 15 조
이사회 內 위원회 (제3조, 제33조)	▪ 지배구조법 상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 명확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경영위원회	「지배구조법」 제 16, 18 조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제36조)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 인 이상에 대해 분리선임 도입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반영 가. 일반주주 : 주주별 3% 초과 의결권 제한 나. 최대주주 등 : 합계 3% 초과 의결권 제한 * 이사 :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동법 제 2 조 제 3 항)	「지배구조법」 제 19 조

※ 개정 정관 시행일 : 2016.8.1일

III. 예산 및 결산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회사의 주요사업계획과 함께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정관§30, 이사회규정§10).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10).

이에 따라 '16년 예산(사업비 19,410억원)은 '16년 경영목표 및 전략과 함께 '15.12월 개최된 제49기 제13차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15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마련한 초안을 이사회(제50기 제1차 이사회_'16.2월)에서 심의·의결 후 외부감사인 검토 및 감사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차기 이사회(제50기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제50기 제2차 이사회 : 제49기 재무제표 등 승인(제4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단위 : 억원)

별도기준		연결기준	
원수보험료	114,879	매출액	159,554
당기순이익	4,127	당기순이익	5,657
자산총계	305,628	자산총계	400,179
배당	981		

IV.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상법상 지점 및 현지법인의 신설,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 등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10⑤).

경영위원회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상법상 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V.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이사회는 관련 법규와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15년 12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제정(제49기 제13차 이사회)하였으며, 2016년 10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제50기 제7차 이사회)하는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VI.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상법」,「보험업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해상충행위의 관리 및 감독을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이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 내부거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건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정기적인 감사결과 보고 등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검토 자료요구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위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이사회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의결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추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VII.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사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및 산하 전담조직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정도경영・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의 신뢰 및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2016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거래 건의 사전 심의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사회규정§11).

VIII.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내부규범§14, §17), 위험관리위원회는 전사 위험관리 전략 및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 및 의사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및 리스크관리 전략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IX. 경영승계업무

당사는 중장기적 관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과 역할의 명확화 및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비상상황 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49기 제13차 이사회(2015.12월) 의결을 통해 제정하였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사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의 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정관 상 등기이사의 총원수는 3명이상 10명 이하로 제한하며, 상법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의 총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원수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정관§24). 사외이사의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가 구성원수가 5명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입니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12).

또한 최대원수를 10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0명이상인 경우 이사간 일정조율 등 의견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6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5명의 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과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험경영분야 2명, 금융경제분야 1명, 행정분야 1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인 이사)의 경우 3년이고, 사외이사의 경우 1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당해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총 9년 이상 재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정관§26).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 및 매년 실시되는 사외이사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6.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3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연임되고 1명이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이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인사파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9).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의 추천과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보험분야 및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이사회를 이끌어온 김정남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관

30조 등에 의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금융에 대한 폭넓은 업무경험과 당사의 비전 및 보험산업 경영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근거로 박상용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다른 위원 전원의 동의로 선임사외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2016년3월_제50기 제3차 이사회).

(2) 구성원

(2016.12.31일 기준)

성명	구분	직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소속 소위원회
박상용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감사委 위원장	2013.06.14- 2017.03.18 (5연임)	감사委, 위험관리委, 임원후보추천委, 내부거래委
안종태	사외이사	보상委 위원장	2015.03.20- 2017.03.18 (2연임_23개월)	임원후보추천委, 내부거래委, 보상委
김성국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委 위원장	2016.03.18- 2017.03.18 (초임_11개월)	감사委, 보상委, 사외이사후보추천委
김정남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의장, 위험관리委 위원장 경영委 위원장	2009.06.12- 2018.03.20 (재임)	리스크관리委, 경영委
안형준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내부거래委 위원장	2013.06.14- 2019.06.18 (재임)	감사委, 경영委, 보상委, 내부거래委

(3) 약력 요약

성명	주요 경력
박상용 (사외이사)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안종태 (사외이사)	(前) 한국기업경영학회장 (前) 대한경영학회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성국 (사외이사)	(前) 한국기업경영학회장 (前) 대한경영학회장 (現)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정남 (대표이사, 사내이사)	(前) 동부화재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前) 동부화재 신사업부문장 부사장 (前) 동부화재 개인사업부문장 부사장
안형준 (상근감사위원, 사내이사)	(前) 보험감독원 선임/재무부 보험국 (前) 서울보증보험 상무 (前) 에르고다음 손해보험 상근감사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5.8%입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높은 참석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이사회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에 소집된 제50기 7차 이사회에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정비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관련규정 제/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6년 이사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총 8회의 이사회 동안 사내이사(김정남, 안형준)는 전 이사회에 참여 하였으며, 사내이사의 참여내용과 이사회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0 기 제 1 차 이사회

- 일시 : 2016 년 2 월 2 일 화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2 월 1 일

항 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 고
1. 사외이사 성명	이수휴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3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제 49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 50 기 제 2 차 이사회

- 일시 : 2016 년 2 월 19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02 월 18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이수휴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5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제 49 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동부캐피탈 신용공여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 50 기 제 3 차 이사회

- 일시 : 2016 년 3 월 18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3 월 17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이수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나. 제 2 조 의안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다. 제 3 조 의안 - 제 50 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라. 제 4 조 의안 - 동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마. 제 5 조 의안 - 동부증권 후순위 회사채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제 50 기 제 4 차 이사회

- 일시 : 2016 년 6 월 17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6 월 16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3 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없음				

▶제50기 제5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6월 29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1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없음				

▶제50기 제6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8월 22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3건(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의안 - 동부캐피탈 신용공여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50기 제7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10월 27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의안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3호 의안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4호 의안 -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50기 제8차 이사회

- 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12월 22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의안 -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2호 의안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3호 의안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 내규 등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은 크게 ①구성, ②역할과 책임, ③운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위 8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항목별로 5점 만점기준의 배점 방식으로 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규모, 구성비율 등구성의 적정성과 개최시기, 의결안건, 이행률, 출석률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안건 부의/심의 적정성과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여부, 자료와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의사록 및 이사회 구성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평가절차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세부적인 업무는 이사회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로 구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연1회 평가를 이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임직원의 보수와 연동된 성과평과와는 별개로 이사의 연임 또는 재임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 :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內 '바. 사외이사 평가' 항목 참조
- 사내이사 평가 :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는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임원보수 등 지급을 위한 임원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운영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이사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및 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보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당해년도 이사회 평가결과 및 각 사내이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5점만점으로 환산하는 형태로 이사회 평가 결과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의거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회 이사 중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의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제,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6년 이사회의장으로 지난해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온 점과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김정남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으로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박상용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이사회 산하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운영하여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지원부서인 인사파트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발굴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의 후보군 구성 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제59기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세부적인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동 위원회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및 상법 등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고, 후보군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적정후보자 압축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에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적정 후보자를 위원회 심사 및 결의를 통해 이사회,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위원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군 중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 평가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김성국	사외	위원장	2016.03.18-2017.03.18 (초임)
박상용	사외	위원 (선임사외이사)	2016.03.18-2017.03.18 (4연임)
안종태	사외	위원	2016.03.18-2017.03.18 (2연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및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후보자격 요건의 세부사항은 지원부서의 후보군 심의 및 발굴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임직원 및 사·내외 전문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 받은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의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임원(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업무수행 평가 방식은 '이사회 및 이사 직무평가(19페이지)'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는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6년에는 총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100%입니다. 사외이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높은 참석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재선임을 위해 2016년 2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및 운영현황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15년 3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의 사외이사 중 이수휴 사외이사의 연임제한으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군 중 1인의 사외이사 후보자(김성국)를 심의를 통해 신규 추천하였으며,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는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고려하여 위원간의 추천 및 승인 하에 재선임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50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일시 : 2016 년 02 월 19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02 월 18 일

<table>
<tr><th colspan="3">항목</th><th colspan="3">사외이사 활동내역</th><th>비고</th></tr>
<tr><td colspan="3">1. 사외이사 성명</td><td>이수휴</td><td>박상용</td><td>안종태</td><td></td></tr>
<tr><td colspan="3">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td><td>참석</td><td>참석</td><td>참석</td><td></td></tr>
<tr><td colspan="3">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td><td colspan="3">1 건(특이사항 없음)</td><td></td></tr>
<tr><td colspan="6">4. 의결안건</td><td></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4">가. 제 1 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td><td></td><td>찬성</td><td>찬성</td><td>찬성</td><td></td></tr>
<tr><td>김성국</td><td>찬성</td><td>찬성</td><td>찬성</td><td rowspan="3">전원
찬성으로
가결됨</td></tr>
<tr><td>박상용</td><td>찬성</td><td>의결권
제한</td><td>찬성</td></tr>
<tr><td>안종태</td><td>찬성</td><td>찬성</td><td>의결권
제한</td></tr>
</table>

※ 각 사외이사는 본인에 대한 후보 추천 및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제 50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일시 : 2016 년 03 월 18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03 월 17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김성국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3) 평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업무수행 평가 방식은 '이사회 및 이사 직무평가(19페이지)' 관련 항목에서 정의된 '이사회 평가'와 동일한 형태로 평가하며, 다만, 설문평가 대상자를 해당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운영적정성 점검 및 위원회 위원의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평가는 위원회의사록 및 위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모든 평가절차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 : 해당없음

現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8.3월 임기만료 예정으로, 후보추천 불필요

(2) 감사위원 후보 : 해당없음

2016년은 정기주주총회('16.3.18일)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 정기주주총회 이후 시행('16.8.1일)됨에 따라, 2016년 해당사항 없음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수휴 사외이사의 연임이 제한되고,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016년 2월 19일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사외이사 평가결과와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격요건 적정성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외이사 2인(박상용, 안종태) 및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 1인(김성국)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 성명 및 인적사항

1. 박상용

① 출생연도 :1954년

② 출신학교

- 서울대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리버풀대 대학원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1998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2001 (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 2009 (前)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2011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당사 근무기간 : 2013년 6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2. 안종태

① 출생연도 :1954년

② 출신학교

- 성균관대 학사
-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2006 (前) 한국기업경영학회장
  - 2010 (前) 대한경영학회장
  - 2012 (前) 한국인사관리학회장
  - 2013 (前)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 ~2016 (現)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CJ프레시웨이

④ 사외이사 경력

- 당사 근무기간 : 2013년 6월 ~ 현재
- 사외이사 평가결과 : 매우 적합

3. 김성국

① 출생연도 :1950년

② 출신학교

- 서울대 학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③ 경력

- 일반경력
  - 1978 (前) 재무부 보험국
  - 2001 (前)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국장
  - 2002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
  - 2004 (前)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 2008 (前)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사장
- 다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해당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해당 없음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및 제안사유

각각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후보제안자와 제안사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상용을 추천한 제안자 : 이수휴 사외이사

- 추천사유 : 공정거래 등 폭넓은 행정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당사의 발전과 공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제4대 보험감독원 원장

▪ 안종태를 추천한 제안자 : 박상용 사외이사
- 추천사유 : 인적자원 관리 및 노사관계 전공의 경영학 교수로 폭넓은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및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 김성국을 추천한 제안자 : 이수휴 사외이사
- 추천사유 : 금융행정분야에 대한 폭넓은 업무경험 및 금융회사 재직경력 등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 충족 및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 등
- 추천자의 주요경력 :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제4대 보험감독원 원장

② 후보자와의 관계

추천된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 및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이해상충을 우려할만한 거래관계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외이사간 및 사외이사 후보제안자와 후보자 간에도 거래관계 등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며,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 시 다양한 의견개진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높은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출석률 등을 통해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였습니다.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 역시 다양한 금융행정 경험과 금융회사 재직경력 등을 통해 보험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공정성과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기존의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근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심의를 통해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점검결과 : 법령상의 자격요건 충족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헌장 등을 통해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 시 사외이사 후보군 내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는 등 위원회 운영 시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대상자의 공정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관계는 전혀 없으며, 사외이사의 겸직업무에 대해서도 당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운영 및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충실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대상자의 충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총 1개 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당사의 이사회, 이사회 內 위원회의 참석 및 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인 소명

당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총소집 결의사항을 공시할 때에 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확인서를 본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는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당사는 2016년 2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中 본인 추천 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평가결과

2016년 3월 18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명이며, 이중 이수휴 사외이사는 5연임, 박상용 사외이사는 3연임, 안종태 사외이사는 1연임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이수휴	2011.06~	5연임	89%	실시
박상용	2013.06~	3연임	100%	실시
안종태	2015.03~	1연임	85%	실시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시 이사회평가, 자기평가, 직원평가로 구성된 다면평가를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평가내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참석률로 정하고 있으며, 자기평가와 직원평가의 평가항목은 주주의 이익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기본 역할과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 후보자는 적극적 의견개진 및 높은 이사회 참여율 등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6년 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하였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군 중에서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금융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사외이사 2명과 사외이사 후보군 중 1명을 선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이사, 주요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이사, 주요주주, 임원,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로 구성된 후보군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2015년 12월(제49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을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 현황 및 주요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 총 20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운영 중

총원	공직	금융	학계	법조	군
20	8	5	5	1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15년 12월(제49기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사외이사후보군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제50기 제2차 이사회)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현황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지원부서 : 이사회 간사(부서)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부서원 5명
- 담당자 : 부서장(총괄) 1명, 과장급 2명
- 지원내역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업무지원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검증 및 관리

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활동내역

이수휴, 박상용, 안종태 사외이사는 '16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內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안건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사회 및 각 위원회별 활동내역은 해당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수 (사외이사 1인 기준)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000천원**	
	1. 기본금	42,000천원	月3,500천원 x 12
	2. 상여금	-	
	3. 기타 수당	-	
나. 보수 이의 기타 편익		**1.200천원**	
	1. 업무활동비	-	
	2. 건강검진 지원	1.200천원	종합검진 1회(배우자 포함)
	3. 차량제공	-	
	4. 사무실제공	-	
	5. 기타 편익제공	-	

(3) 요약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		위험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보수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활동 시간 (합계)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박상용	8	8	5	5	5	5	2	2	-	-	5	5	125시간
안종태	8	7	-	-	-	-	2	2	3	3	5	5	85시간
김성국	6	6	4	4	4	4	1	1	2	2	-	-	85시간

나.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1) 가입사: 메리츠 화재

(2) 가입기간: 2015.12.31~2016.12.31

(3) 보험금(한도): 700억원(사외이사 자기부담금 최대 1억원)

(4) 보험료: 658,714천원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안종태	김성국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6.3.18 (금) -내용 : IFRS4 2단계 주요사항 안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6.5.18 (수) -내용 : 신임사외이사 대상, 주요 경영현황 및 관련 사규체계 안내 (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불참 (신임사외이사대상)	불참 (신임사외이사대상)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16.8.22 (월) -내용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주요사항 및 당사 대응현황 안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2	2	3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박상용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나. 직무공정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라. 충실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2) 사외이사 안종태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나. 직무공정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라. 충실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3) 사외이사 김성국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나. 직무공정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라. 충실성	충족	해당요건충족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6년간 미만 재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다면평가방식(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연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주관하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평가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의 네가지 항목에 대해 다면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이사회평가,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평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출석율로, 자기평가 및 직원평가는 평가설문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설문서의 평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모든 주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의 경영이념과 장기적인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회사의 지속 가능한 목표와 이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평가 절차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중 사외이사별 활동내역에 대한 다면평가방식(자기평가,이사회평가,직원평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후에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위탁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15년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본인, 담당 임직원에 의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이 주주가치 제고 등에 부합하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적인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구분	이수휴	박상용	김성국
전문성	▪ 국가행정 및 공정거래 등 관련 최고수준의 전문성 보유	▪ 인사관리, 노무 등 경영학 분야의 최고수준의 전문성 보유	▪ 금융과 보험산업에 대한 공직 경험과 금융사 대표이사 경험을 겸비
직무공정성	▪ 공정거래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및 해외 사업 진출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시 등 최고수준의 경쟁력 보유	▪ 인사, 노무관리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균형감있는 의견 개진 및 원할한 이사회 진행을 위한 노력 등 최고수준의 경쟁력 보유	▪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으로 건전하고 원활한 이사회 운영 지원
윤리책임성	▪ 공정거래 등 에 대한 행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윤리책임성을 보유	▪ 공립대 교육 공무원으로 최고수준의 윤리책임성을 보유	▪ 공직자 출신의 청렴한 성품과 주주, 투자자 등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하는 윤리책임성을 보유
충실성	▪ 2016년 내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전체 출석(100%)	▪ 본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해외출장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석률(94.4%) 유지	▪ 2016년 내 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 전체 출석(100%)

(3) 외부평가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사외이사의 제50기 제3차('16.3.18) 및 제50기 제6차('16.8.22) 이사회 의결안건의 이행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에 따라, 각 안건별 이행 완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제50기 제6차 이사회 보고안건(지배구조법 주요내용 보고)에 대한 당사대응방안을 제7차('16.10.28) 이사회 의결사항에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자료로 보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이사회 간사(부서)
- 조직구성 : 부서장 1명, 과장급 2명
- 지원내역
  - ▪ 선임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위한 실무지원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자료 기록 및 관리
  - ▪ 선임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시 및 요구내역 처리
  - ▪ 기타 선임사외이사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아.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경력
엄홍렬	`05.6.15	`11.6.15	72개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험감독원 기획부 기획과장 -보험감독원 기획조정실장 -태양생명보험(주) 관리인
이근영	`10.6.11	`13.06.13	36개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김선정	`10.6.11	`15.3.14	57 개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수휴	'11.6.10	'16.3.20	57개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재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보험감독원장
박상용	'13.6.14	'17.3.18	45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공정위 사무처장 -법무법인 율촌고문
안종태	'15.3.20	'17.3.18	24개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대한경영학회장 -한국인사관리학회장 -강원대 경영학 교수
김성국	'16.3.18	'17.3.18	12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재무부 보험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의 제정('15.12월)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시행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른 후보군 운영 등 적정성 여부는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 및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은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주관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각종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지원부서(인사파트)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시점에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받아 자격요건(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4조) 충족 여부를 확인 한 후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여야 하며, 최종 후보를 확정한 이후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업무대행,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제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비상상황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비상계획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관 규정(제29조)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최고경영자가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승계규정」 제4조)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지속가능한 회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진 등을 대표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은 필요할 경우 주주, 사외이사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는 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제49기 제5차 이사회, 2015.2.27)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총괄하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업무를 인사파트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7인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운영현황 등은 매년 연 1회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을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3) 후보군 현황

당사는「최고경영자승계규정」상 지원부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주요 경영진(7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당사는 제51기 제2차 이사회(2015.12월)에서 정한「최고경영자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승계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관련「최고경영자승계규정」제6조에 따라 인사파트를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파트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이외에도 채용, 인력관리, 인사제도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파트
- 직원수 : 총14명
- 담당자 : 총괄–파트장 1명, 담당-과장 1명, 대리 1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외부감사인의 선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법성 및 적정성 관점에서 감시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총 3명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위원 전원을 경영/회계/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등을 통한 사전심의를,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상법 §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402)
이에 따라 '16년 2월에 소집된 2016년도 1차 감사위원회는 제50기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의 임원이 동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감법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전문성 및 대외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 회계법인 중 외부용역계약 절차에 따른 검증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상감사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수시로 이슈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7조)

-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 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외감법시행령 제7조)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합니다 (외감법 제2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평가한 후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16.8.1 이전 - 보험업법 §17, '16.8.1 이후 - 지배구조법 §25)

감사위원회는 '16.2월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받았고,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회계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경영일반, 보험영업, 자산운용, 보험회계의 총 7개 항목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동부화재의 감사위원 3명은 상기 자격을 충족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상용	사외	위원장	2016.3.18	2017.3.18
김성국	사외	사외감사위원	2016.3.18	2017.3.18
안형준	상임	상임감사위원	2016.3.18	2017.3.1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6년에는 재적위원 모두의 참여 하에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미리 감사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 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관련 임원에게 직접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총 8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50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일시 : 2016 년 2 월 19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2 월 15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이수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이사회 보고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나. 제 2 호 의안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다. 제 3 호 의안 - FY2015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라. 제 4 호 의안 -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 50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일시 : 2016 년 3 월 18 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3 월 14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건	찬성	찬성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제 50 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 일시 : 2016 년 4 월 18 일 월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 년 4 월 12 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 1 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건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제50기 제4차 감사위원회

- 일시 :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6월 13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의안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심의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제50기 제5차 감사위원회

- 일시 :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 안건 통지일 : 2016년 12월 19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4. 의결안건				
	가. 제1호 의안 - 2017년 감사계획 심의	찬성	찬성	전원 찬성 가결됨

(3) 평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대한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 중 2016년 활동내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 현황

상근감사위원 산하에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팀을 두고 있고 감사팀장이 감사보조조직을 총괄하고 있으며, 감사보조조직의 인원은 감사팀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입니다

(2) 상임감사위원(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지원한 주요내용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6.2.19	감사위원회	2015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건 등
2016.4.18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2016.6.17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일상감사범위) 개정
2016.12.23	감사위원회	2017년 감사계획
상시	상임감사위원	일상감사 업무 및 경영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등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

위험이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자기자본 또는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를 통해 위험 발생원천을 파악해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위험을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위험관리 전략수립과 허용한도 설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가 직면한 위험수준이 가용자본 대비 적정 수준인지 파악하여 결정한 뒤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자본을 각 위험 종류별로 배분합니다. 배분된 위험 종류별 위험자본의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 유형별(보험, 금리, 신용), 투자 유형별(주식, 부동산 등) 한도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사는 위험관리 전략을 지급여력제도(이하'RBC 제도'라 함) 강화에 따른 RBC비율 유지방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기인한 금리변동성 증가에 따른 가치변동 최소화 및 이자수익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 유지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자본배분, 한도설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조직을 통합하고, 통합(자회사 포함)/보험/금리/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RM 부서와 위험자산 심사 및 관련 프로세스 등 시장/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산RM으로 분리하는 등 보다 더 전문화되고 정밀한 위험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ERM시스템 및 각 개별 시스템을 통한 시나리오 테스트(민감도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하에서도 계속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위험수준 및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RM시스템으로는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결정된 포트폴리오 자산에 자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위험별 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신용리스크 한도 관리로는 위험자본 한도, VaR한도, Exposure 한도, 손실한도, Loss Cut, 분산도 관리 등이 있으며, 금리리스크 한도 관리는 위험자본 한도, 듀레이션 및 자산/부채 Spread 등 ALM시스템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리스크 한도 관리는 보험종목별 보험위험계수 가이드라인, 보험리스크 시스템을 활용한 보유전략(재보험운영전략) 등을 통해 자본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회사 전체가 직면한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분된 위험자본 중에서, 시장/신용위험자본 관리를 위해 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① 한도

구분	주요내용
신용위험액 한도	RBC 관리
운용한도	포트폴리오 관리
VaR한도	시가평가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실 방지 및 변동성 관리
일중운용한도	일중 대규모 익스포져 노출 방지
증거금한도	일중운용한도 위반 가능성을 방지
운용손실한도	대규모 손실 방지
손절매한도	대규모 손실 방지
신용등급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②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내용
주식 분산도	특정 주식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국가별 분산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주식 분산도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채권 분산도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산업별 대출채권 분산도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계열별(그룹별) 분산도	금융감독원 선정 주채무계열(그룹)에 대한 집중 투자 방지
채권신용건전도	채권의 신용건전도를 스코어링하여 관리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 법령 및 사규의 개정에 따른 변경,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변경, 기타 이에 따른 단순한 편제의 자구의 정리 등 이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합니다.

(마) 기타

그 외 당사는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리스크 주요지표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동내역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방침 上 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기준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관련 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적 경영의사결정 및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보험·법률·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정남	상임	위원장(CEO)	'15.03.20	'18.03.20
박상용	사외	이사	'16.03.17	'17.03.18
김성국	사외	이사	'16.03.17	'17.03.1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16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위원 전원 100% 참석하였습니다. 다섯 차례 위원회를 통해 12건의 안건(의결사항 7건, 보고사항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 및 리스크관리 전략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6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월 2일 수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이수휴	박상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FY'16 리스크관리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FY'16 파생금융거래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3]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16 연간 리스크관리 방향, 위험자본 배분, 한도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FY'16 자산부채 관리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파생금융 거래전략 수립

3)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실무위원 참여 제외, 조직개편 반영

(나) 제2016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3월 18일 금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2건(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2]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① FY'15.12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② FY'15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2)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회를 대표할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선임

(다) 제2016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8월 22일 월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3건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無				

1) ① FY'16.6월 자본적정성평가 결과보고
② 만기보유증권 계정 재분류 보고 (감독규제 강화 대응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
③ FY'16.6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라) 제2016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12월 5일 월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FY'16 장기 재보험운영전략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지진/풍수재 Event XOL 가입 통한 장기재물 지진/풍수재에 대한 거대위험 담보력 강화

(마) 제2016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12월 23일 금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박상용	김성국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FY'17 위험관리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2호안건[2]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FY'17 연간 리스크관리 방향, 위험자본 배분, 한도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겸업업무, 거래기록 관련 위험관리기준 개정

(3) 평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대한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 중 2016년 활동내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내부거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동부화재 내부거래위원회는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 계열사 및 자회사 등과의 거래(이하 '내부거래'라고 함)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①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보험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여부 등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게 합니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 이사회 보고

내부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나. 구성(내부거래위원회 위원)

(1) 총괄

내부거래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내부거래의 공정성 및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운영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상용	사외	위원	`16.03.18	`17.03.18
안종태	사외	위원	`16.03.18	`17.03.18
안형준	상임	위원장[1)]	`16.03.18	`19.03.1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내부거래위원회는 2014년 5월 26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어 '16년에는 총 5회의 내부거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6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6년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2월 19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안형준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안건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6년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 3월 18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안형준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동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동부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6년도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 3월 18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안형준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안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6년도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 8월 22일 월요일 [안건 통지일 : 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안형준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안건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6년도 제5차 내부거래위원회 : 10월 28일 금요일 [안건 통지일 : 월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안형준	박상용	안종태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안건 계열공익법인 기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대한 평가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 중 2016년 활동내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 경영위원회

가.역할

(1) 총괄

동부화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이사회규정 및 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지점의 신설/이전/폐쇄,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각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성(경영위원회위원)

성명	상임/비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정남	상임	위원장	'15.03.20	'18.03.20
안형준	상임	위원	'16.03.18	'19.03.18

다. 활동내역

(1)활동내역 개요

'16년에는 총 6의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지점(사업단)이전의 건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 제50기 제1차 경영위원회 : 1월13일 수요일 [안건통지일:1월1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김선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인사상 변화(인사발령)에 따른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을 하고자 함

(나) 제50기 제2차 경영위원회 : 3월 10일 목요일 [안건통지일 : 3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김선정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신한은행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지점(보상부) 이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당사거래은행과의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약정기간을

갱신하여 일일 자금 유동성 및 긴급자금을 확보 하고자 함

2) 보상부 등의 사무환경 개선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한 지점 이전을 부의하고자 함

(다) 제50기 제3차 경영위원회 : 6월9일 목요일 [안건통지일 : 6월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일중차월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당사 거래은행과의 일중차월 약정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일을 갱신하여 일일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제50기 제4차 경영위원회 : 8월 22일 월요일 [안건통지일 : 8월 1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지점(사업단) 이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지배인 해임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 사업단 등의 사무환경 개선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한 지점 이전을 부의하고자 함

2) 인사상 변화(인사발령)에 따른 지배인 해임 및 변경을 하고자 함

(마) 제50기 제5차 경영위원회 : 10월 6일 목요일 [안건통지일 : 10월 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지점(보상부) 이전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1] 지배인 변경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 보상부 등의 사무환경 개선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한 지점 이전을 부의하고자 함

2) 인사상 변화(인사발령)에 따른 지배인 변경을 하고자 함

(바) 제50기 제6차 경영위원회 : 12월 8일 목요일 [안건통지일 : 12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정남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無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1] 지점(사업단)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2] 일중차월 신규 개설 및 갱신의 건	찬성	찬성	가결

1) 사업단 등의 사무환경 개선 및 영업활성화 등을 위한 지점 이전을 부의하고자 함

1) 당사 거래은행과의 일중차월 약정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일중차월 신규 개설 및 기일 갱신을 통해 일일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 연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2016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2010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 중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 중 안종태 사외이사는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은 2년이며, 김성국 사외이사는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에 제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2조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안종태, 김성국, 안형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인(안종태, 김성국)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안종태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성국 위원은 현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위험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국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6년 3월 주총 이전까지는 이수휴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3월 정기주총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안종태	위원장	사외이사 O	X	前 학국기업경영학회장 前 대한경영학회장 現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이수휴	위원	사외이사 O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O	前 관세청장 前 재무부 차관 前 국방부 차관 前 보험감독원장 前 은행감독원장
안형준	위원	사외이사 X	X	前 보험감독원 보험국 前 서울보증보험 상무 前 다음손보 상근감사

- 2016년 3월 정기주총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안종태	위원장	사외이사 O	X	상동
김성국	위원	사외이사 O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O	前 재무부 차관비서관 前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前 IBK신용정보 사장
안형준	위원	사외이사 X	X	상동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안종태	사외	위원장	'16.3.18.	'17.3.17
김성국	사외	위원	'16.3.18.	'17.3.17
안형준	상임	위원	'16.3.18.	'19.3월 주총시까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제50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CEO 및 CFO에 대한 기본보수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CEO 및 CFO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식은 아래 보수의 세부정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7년 2월 24일 개최된 제51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제50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총보수 중 고정보수와 성과보수의 비중,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의 적정성을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보험회사 성과보상 모범규준에 따라 CEO 및 CFO에 대해 시행 중이던 성과보수 지급제도를 全 임원으로 확대하는 『임원 보수 규정』을 심의 후 제정 시행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의 총 보수는 기본보수과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성과보수의 평균 이연기간이 기존 3년이 적정하다는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6년 10월 28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주요현황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절차 사항을 심의하고 보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아래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7년 2월 24일 개최된 제51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

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17년 2월 24일 개최된 제51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회사 내 모든 실/부문에 적용
② 해외 : 해외영업 지점에 적용(단, 현지채용인은 제외)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5조에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제50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 등을 규정한『임원 보수 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를 변동보상 임원의 범주로 하였습니다(단,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단,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 등 금융투자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없는 바,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성과보수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7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부터 변동보상을 유효하게 적용하며, 2016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CXO 성과보상 규정』에 따라 CEO 및 CFO 각 1명에 한하여 2017년 중 성과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안종태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부의 안은 안건 부의 위원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배석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성과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0%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16년 3월에 소집된 제50기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5년 성과보수체계 연차보고의 건을 승인하였고, 2016년 3월 주주총회 이후 소집된 제50기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12월 소집된 제50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3~2015년 CXO 장기성과 평가 보고의 건 승인 및 『임원 보수 규정』 제정에 대해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6년도 제50기 제1차 보수위원회 : 2016. 2. 19(금) 09:30
〔안건 통지일 : 2016. 2.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종태	이수휴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2015년 성과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6년도 제50기 제2차 보수위원회 : 2016. 3. 18(금) 15:00
〔안건 통지일 : 2016. 3.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종태	김성국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6년도 제50기 제1차 보수위원회 : 2016. 12. 23(금) 10:00
〔안건 통지일 : 2016. 12. 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종태	김성국	안형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CXO 장기성과 평가 결과	찬성	찬성	찬성	
4. 의결안건				
'임원 보수 규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연1회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 전체의 주요 성과측정은 재무지표(세전순이익, 손해율, M/S 등), 고객지표(유지율, 고객만족도, 민원발생건수 등), 프로세스지표(RBC, 경영혁신, PA도입 등), 학습성장지표(글로벌 우수인력, 핵심직무 관리인력, 직원만족도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전사 성과측정 지표 중 관할 사업부문과 관련한 지표(예> 개인사업부문 임원의 경우 M/S, 유지율, PA도입 등을, 보상서비스실 임원의 경우 손해율, 고객만족도, 민원발생건수 등) 및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성과측정 지표와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시 임원별 성과측정 지표 확정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개별 KPI 및 비계량부문의 전략과제 이행률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회사 주가와 연계하여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임원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수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회사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및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연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시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이연지급분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이연지급액은 성과평가연도의 평균주가(사업연도 중 매월말 주가의 평균)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P.I.)

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임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과 회사 주가 연계 지급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결정된 성과보수 중 60%는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주식수로 확정하여 향후 3년간 균분하여 배정한 후 이연지급시점의 회사 평균주가(사업년도 중 매월말 회사주가의 평균)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40%는 결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3년간 균분하여 이연지급(1차 년도 20%, 2차 년도 20%, 3차 년도 20%)하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회사주가 연계방식으로 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2000년부터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성과주의 고취를 위하여 성과에 연동한 특별보상(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봉은 직원의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연봉산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기함으로써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 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6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6년 10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위원회 규정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소집된 제50기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지급 대상을 기존 CEO 및 CFO에서 전 임원(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으로 확대하는 임원 보수 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별 2017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비율 (A/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15년)	2,778	4,950	0.56	4,689	0.59
당해년도 (2016년)	2,996	5,387	0.56	4,541	0.66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미등기	L직급 (관리)	P직급 (실무)	A직급 (사원)	다이렉트 영업	기타
전년도 (2015년)	보수총액	9.7	74.9	610.1	812.6	204.4	380.3	760.8
	성과보수액	0	0	0	0	0	0	0
당해년도 (2016년)	보수총액	10.1	68.0	643.3	877.5	186.5	409.2	801.4
	성과보수액	0	0	0	0	0	0	0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5년)	임원	2	10.7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0	0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2	11.2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0	0	0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축소액[주1]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5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16년)	임원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정 관

2017.03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주 식 ---------- 2

제 3 장 주 주 총 회 ---------- 7

제 4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 8

제 5 장 감사위원회 ---------- 12

제 6 장 계 산 ---------- 13

부 칙 ---------- 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DONGBU INSURANCE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상법상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하고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6 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수)

회사가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500,000 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에 있어서는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사업의 추진,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단, 1 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발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를 한도로 한다.
3. 액면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단, 1 인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은 신주발생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를 한도로 한다.

②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외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①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①항 제 2 호 및 제 3 호, 제②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한다.

⑥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①항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시 이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내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부여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⑪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결의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임원승진 또는 관계사 전배로 인한 퇴임・퇴직은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임・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8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신주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0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 개월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3 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29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의 상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통지·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29 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 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제 24 조 (이사의 수)

회사는 3 인 이상 10 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상법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 인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외이사는 제 33 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25 조의 2 (사외이사의 자격조건)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3.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계열회사.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4.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기업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

제 26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7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0 조의 2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의 선임)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3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경영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하는 경영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 (경영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회 위원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경영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경영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 1 명 이상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그 주주는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⑥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부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6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물출자) 당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 발기인 전원
2. 출자의 목적인 재산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 번지의 25	垈 69 坪 3 合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 번지의 8	垈 193 坪 1 合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 번지의 9	垈 194 坪 4 合
	計 456 坪 8 合

3.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 90,972,104 원
4. 부여하는 주식보통주식 90,972 주

③ (설립비용) 당사의 설립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하며 최초의 3 개 영업년도에 분할 상각한다.

1968 년 10 월 10 일

발기인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19 번지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문 옥 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43 번지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성 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75 번지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치 복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4 가 64 번지의 1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필 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8 번지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호 상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3 가 11 번지의 3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병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99 번지의 50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동 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8 번지의 1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손 영 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3 번지의 1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임 헌 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7 번지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시 경

부 칙

이 정관은 1974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2 년 1 월 1 일부터 1982 년 3 월 31 일까지는 이를 1 영업년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3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6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0 조 제 1 항 및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1985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조(상호) 상호변경은 199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의 2, 제 1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5 조, 제 29 조의 2, 제 30 조, 제 31 조, 제 34 조,

제 39 조의 개정 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②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 년 4 월 1 일) 당시 동법 제 189 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 41 조의 2(주식의 소각)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 제 189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을 적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 189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할 것.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증권거래법 제 189 조 제 3 항 제 2 호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 후 6 월이 경과할 것.

부 칙 (2002.5.30)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11)

이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때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0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25 조의 2 및 제 26 조의 제①항의 후단은 본 정관 시행 후 선임 또는 연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39 조는 2013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2013 사업년도는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 11.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內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 이란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 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①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 등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6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며 세부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차입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결과
2. 주요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이사의 자격요건 등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하며, 경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와 제6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책임감 및 충실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이사의 선임과 해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⑤ 이사는 임기의 만료, 사임 의사의 표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등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0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상법 415조의2 제3항)' 및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한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임원회를 두며, 경영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은 다음과같다

1.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최고경영자(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규범에서 같다) 및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후보 검증
4.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같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④ 감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배구조법 제17조에 관한 사항의 결의
2. 그 밖에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보수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보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9조(내부거래위원회)
①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내부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제111조,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 제 59조의 2 등에서 정하는 거래로서 대주주, 계열사 및 자회사 등과의 자산의 양도, 매매, 교환, 신용공여, 재보험거래 등
2. 그 밖에 내부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0조(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점의 신설, 이전 및 폐쇄
2. 지배인의 선·해임
3.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③ 경영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회 및 위원회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결의 안건 이행 여부,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수행 적정성 등에 대해 연 1회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업무는 이사회 운영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2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지배구조법』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 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제1항 등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상근인 임원은 관련 법규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임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경영활동에 참여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경영임원을 제외한다.)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임원 해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 만료
2. 의원 사직
3. 인사관계 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이사 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임한다.

제25조(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사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회사에서 정한 외부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보수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고정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하며, 보수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

제28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및 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개시사유, 개시시기, 평가기준, 승계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 반영한다.

제29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배구조 및 인사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30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전·경영이념에 대한 이해, 보험업에 대한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공익성 및 회사가치의 증대를 통한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 등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교육 결과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선정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의결하고, 후보자가 등기이사로 신규선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추천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제29조에 따른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발굴·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4. 그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업무

②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을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3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등 주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주요 경영진의 임기와 선임 및 해임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주요 경영진 등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동 법 시행 후 신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이사회 규정

2016. 11.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 사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의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이사가 아닌 자의 출석 등)
의장은 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 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0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주식의 소각
8. 주요 사업계획
9.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규정,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모집
3. 준비금의 자본 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차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영임원회

제 12 조 (경영임원회)

회사는 경영임원회를 두어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한다.

제 4 장 기타사항

제 13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③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간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6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0 년 1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경영자 승계규정

2015. 12.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최 고 경 영 자 승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표이사(이하 '최고경영자'라 한다)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하여 1 항의 심의, 의결을 제외한 사항을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등

제 4 조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는 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 5 조 (후보군 관리)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원부서로 선정하여, 제 1 항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원부서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지원과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검증을 수행하며, 연 1 회 이상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영승계 절차

제 6 조 (경영승계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정관 제 29 조에 의거 직무대행자가 경영승계 절차 완료 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개시 시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은 후,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 선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대행자,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 이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제 8 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건강상의 사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제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회사는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경영승계 개시를 할 수 있다.

②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 검토대상

- 박상용 사외이사 후보(2013년 6월 14일 ~ 현재)
- 김성국 사외이사 후보(2016년 3월 18일 ~ 현재)
- 이승우 사외이사 후보(신규선임)

■ 검토 내용

- 소극적 요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 충족
- 적극적 요건(지배구조연차보고서작성기준 상 적극적 자격) : 충족
- 재선임 대상자에 대한 사외이사 평가결과 : 업무수행능력 우수
  ※ 신규선임 후보자(이승우 사외이사 후보) 제외

■ 검토 결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충족사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임기간 동안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 2명 및 신규선임 사외이사 후보 1명을 추천하기로 함.